



문화체육관광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9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시행 관련 협조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국민들의 다양한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18.12.24.)을 통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 범위에 기존 도서·공연비뿐만 아니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추가하였고,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3. 위 시행일로부터 근로소득자 개인이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부터 동 재화를 신용카드, 현금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판매사업자로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매출, 결제에 대한 자료가 수집되어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사용금액 확인('20.1월부터)이 가능하게 되는 바, 아래와 같이 관련 업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관련 업계·기관 협조사항 -

①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판매 관련 사업자

- 온·오프라인 판매업자, 판매중개업자 등은 사업자 유형별로 정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추가, 분리 및 자체 시스템 개편(기술적 조치)
- 문체부(한국문화정보원)에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행정적 조치) 등

② 카드사, PG사, VAN사, 현금영수증사업자 등

- ☞ 소득공제 부서 및 가맹점 관련 부서에도 반드시 동 정보 공유 및 협조 요청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추가, 분리 및 전용 가맹점 발생 매출 관리
- 현금결제 내역 구분 및 국세청 전송

※ 자세한 사항은 붙임1 매뉴얼 7쪽 이하 'IV. 업계·기관 시행준비 및 협조사항' 참조

4.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세청은 그간 업계,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부처 공동으로 붙임 1과 같이 「2019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관련 업계·기관 시행 안내매뉴얼」을 작성·배포하니, 귀 기관 누리집에 안내매뉴얼·질의응답 자료집 게시, 소속 회원사(업체) 대상 배포·안내 등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1. 2019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업계·기관 시행 안내매뉴얼 1부.
2.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관련 질의 답변(Q&A) 자료집 1부.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신자 국립중앙박물관장, 국립민속박물관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국립한글박물관장, 국립현대미술관장, 한국문화정보원장, 예술의전당 사장, 서울특별시(박물관과장), 대구광역시(문화예술정책과장), 인천광역시(문화재과장), 강원도지사(문화예술과장), 충청북도지사(문화예술산업과장), 충청남도지사(문화정책과장), 울산광역시(문화예술과장), 경기도지사(문화정책과장), 전라북도지사(문화유산과장), 전라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 경상북도지사(문화산업과장), 경상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문화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문화체육과장), 부산광역시(문화유산과장), 전라북도지사(문화예술과장), 광주광역시(문화기반조성과장), 광주광역시(문화도시정책관), 대전광역시(문화유산과장), 대전광역시(문화예술정책과장), 부산광역시(문화예술과장), 여신금융협회 회장, PG협회 회장, 한국신용카드VAN협회 회장,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회장, 각 현금영수증 사업자, 금융결제원(전자금융부), 각 신용카드사 대표이사, 각 VAN사 대표이사, 한국박물관협회, 한국사립박물관협회,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주무관 서지연 행정사무관 송승연 문화기반과장 최진 전결 2019. 6. 13.

협조자

시행 문화기반과-2649 접수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410호 / <http://www.mcst.go.kr>

전화번호 044-203-2642 팩스번호 044-203-3472 / bottle99@korea.kr / 대한민국 공개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